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2023. 6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의회 운영 위원회
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(의 회 운 영 위 원 회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,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○ 2023. 6. 2.(수) ~ 6. 9.(수) [8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

○ 마포구 의회사무국

4. 감사실시 경과

가. 감사반 편성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의회운영 위원회	[위원장] 남해석 [부위원장] 이한동 [위원] 강동오, 고병준, 이상원, 차해영, 최은하	마 포 구 의회사무국	의회운영 위원회실	신준호	박철호

나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자	감사대상부서	감사장소	감 사 방 법	비 고
2023.6.5.(월)	의회사무국	의회운영 위원회실	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·답변	

5. 주요감사 실시내용

- 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확보 관련 사항
- 의회 홈페이지 운영·관리 관련
- 의원 의정활동 홍보 방안 등

6. 감사결과 처리의견

가.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

- 정책지원관 정원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원을 확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람.
- 의회 홈페이지를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리뉴얼하는 방안이나 홈페이지 관리 업체 개선, 혹은 신규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통해 의정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람.
- 의회 연보·회보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각 직능단체 및 협의체 등 외부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.
-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정식 기자간담회 등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의원들께 적시에 안내해주시기 바라며, 이외에도 의원들이

언론과의 소통을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
바람.

- 그동안 의원들이 요구하였던 의회 부속실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
진행 사항을 보고하길 바람.
- 회기 중 의원들의 주차불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.

나. 처리의견

-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
『지방자치법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의회사무국장이
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3년 8월 2일까지 의장(의회운영위원장)
에게 보고하도록 함.